

협성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 【목적】 이 법인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협성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[본조개정 2022.04.23.] [본조개정 2022.06.27.]

제2조 【명칭】 이 법인은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 【사무소소재지】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72 협성대학교 내에 둔다.[본조개정 2022.04.23.]

제4조 【사업】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
2.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, 제공 및 홍보
7. 산학연협력사업 관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, 훈련
8. 대학 안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·연구소 기타 산학연협력기관에 대한 지원
9. 대학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수탁 관리
10. 정부, 지자체, 산업체등의 위탁사업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, 지자체산하기관(복지시설 등) 수탁 운영

11. 대학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
12.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
13. 기타 산학연협력에 위하여 필요한 사업

[본조개정 2022.04.23.]

제5조 【관련기관의 업무협조】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조직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협성대학교 총장(이하 “총장”이라 한다)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22.04.23.]

제2장 임 원

제6조 【임원】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.

제7조 【임원의 임명】 ①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②감사는 협성대학교의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.

제8조 【임원의 임기】 ①임원의 임기는 총장이 임명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삭제

[본조개정 2022.03.28.]

제9조 【감사의 직무】

1.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회계운영을 감사하는 일
3.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4.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나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
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
제3장 조 직

제10조 【단장,부단장】 ①산학협력단에 단장, 부단장을 두며, 단장, 부단장은 협성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단장, 부단장의 임기는 총장이 임명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④부단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운영, 조직관리 및 산학연계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정한다.

⑤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⑥단장,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개정 2025.09.05.]

제11조 【하부조직】 ①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팀
2. 수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직
3. 지역사회 협력에 필요한 조직
4. 그 외 산학연협력사업에 필요한 조직

②하부조직에는 직원, 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 등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개정 2022.04.23.]

제12조 【직원 등의 임용】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,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 다만, 임용·복무·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②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겸직 또는 파견하여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 【사무분장과 권한위임】 ①단장은 제11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사무분장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4조 【운영위원회】 ①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개정 2022.03.28.] [본조개정 2022.04.23.]

제4장 재산과 회계

제15조 【기본재산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총장 승인으로 기본 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.

1. 출연재산
2. 증여재산
3.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4.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

제16조 【운영재원】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.

1.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운영수익
2.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

제17조 【수입】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연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, 유가증권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
3.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, 유가증권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
4.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 법률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.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
6.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·실습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7. 이자수입
8.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
9.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
10. 기타 산학연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품

[본조개정 2022.04.23.]

제18조 【지출】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.운영비
2.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
5.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6. 특허정보 조사,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
7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8.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
9.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연
10. 기타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경비

[본조개정 2022.04.23.]

제18조의2 【성과급의 지급】 ①산학협력단 회계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[본조개정 2022.04.23.]

제19조 【재산관리의 제한】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본 재산의 양도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4.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

제20조 【회계관리】 ①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.

②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 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제21조 【회계기관】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
②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,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총장과 협의하여 대학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22조 【지출방법】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.

②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추진비,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다.

제23조 【회계년도】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24조 【사업계획서 및 예·결산서 제출】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·결산서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성과급 [장삭제 2022.04.23.]

제25조 【성과급의 지급】 [제18조의2로 이동 후 조삭제 2022.04.23.]

제6장 보 수 [장삭제 2022.04.23.]

제26조 【보수】 [조삭제 2022.04.23.]

제7장 보 칙

제27조 【비밀유지의무】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8조 【정관의 변경】 ①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 사항을 관할 법원에登記하여야 한다.

제29조 【해산】 ①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

②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.

③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단장이 청산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0조 【시행세칙】 [조삭제 2022.04.23.]

제31조 【공고】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②공고방법은 산학협력단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s://iacf.uhs.ac.kr/>)에 게재한다.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기일보 신문에 게재한다.

[본조개정 2022.03.28.] [본조개정 2022.06.27]

제32조 【준용】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2.03.28.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산학협력단 설립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